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1회 주민총회 자료집

대통~소통~

대조동
주민자치회
제1회
주민총회

2021.7.10.(토)15:00
대조동주민자치회 YOUTUBE생중계



대조동 주민자치회

목차

- 01 대조동 일반 현황 보고
- 02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03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 04 제1회 대조동 주민총회
- 05 2022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선정 보고
 - 1. 구 참여예산 의제
 - 2. 주민세 개인균등분 의제
 - 3. 시 참여예산 의제
- 06 부록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김익남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주민자치회 회장 김익남입니다.

2021년 한 해의 끝자락으로 접어들며 겨울의 서늘함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는 11월의 한 때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정말 어렵고 어수선한 일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조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대추마을 주민 여러분의 열과 성이 하나로 모여, 제1회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조동 주민총회 대표표어는 “대통!大通 소통!疏通”입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춰버린 올 한 해, 짝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주민 여러분! 대조동 주민총회의 “대통!大通 소통!疏通”표어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모두 하나가 되어 마음껏 소통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을 대표합니다.

대통!大通 소통!疏通의 기치 아래, 우리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거쳐 2022년도 추진할 7개 실행사업의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했고, 2023년도 의제개발 예산에 대한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조동 주민자치회는 이러한 주민총회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엿볼 수 있었던 주민의 열정을 발판으로 삼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조동장 정은미

안녕하십니까. 대조동장 정은미입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 가을의 끝과 나눔의 계절 겨울의 길목에 서 있는 11월, 한해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대조동 주민자치회 평가자료집 첫 번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제한적 상황 속에서도 김익남 주민자치회장님과 각 분과장님을 비롯한 50여명의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투명한 선거관리로 임원선출, 정기회의, 분과회의, 워크숍, 의제발굴 현장회의, 운영세칙결정, 주민공유서재 다독다독 북카페 조성, 주민자치회 로고 선정, 온라인 주민총회개최, 자치회관 방학프로그램 및 은평배움터 프로그램 운영, 한방병원과 업무협약체결, 대추마을 한마음 축제 개최, 자매결연지 방문 역량강화 워크숍, 김장나눔 등 대조동 주민을 위한 작고 큰사업을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추진해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 뿌리앞으로 초대주민자치위원님들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가 깊이를 내려 주민들이 살기좋은 동네, 타지역으로 이사가기 싫은 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라 하지만 코로나 19로부터의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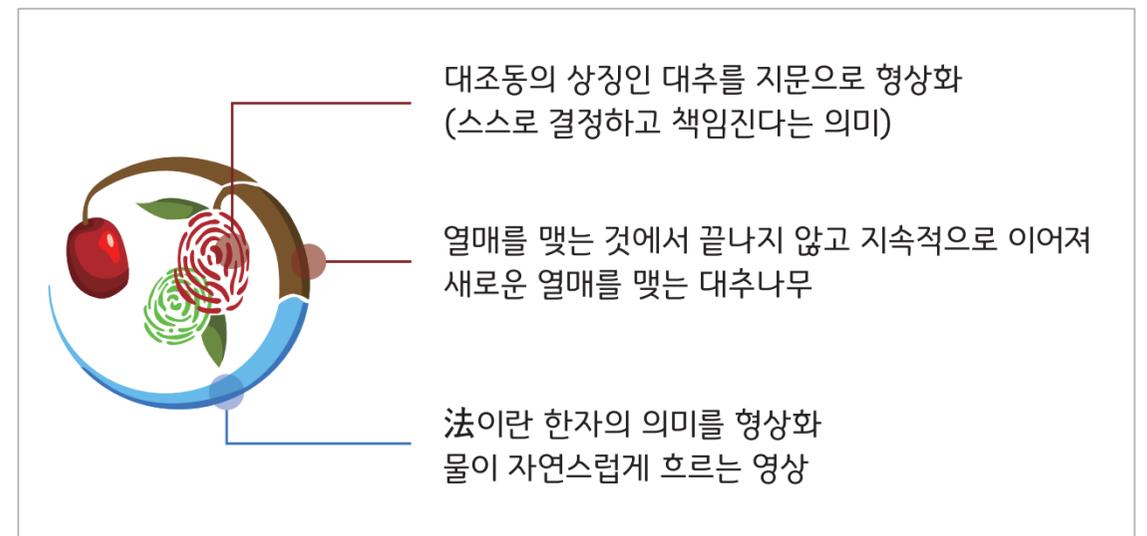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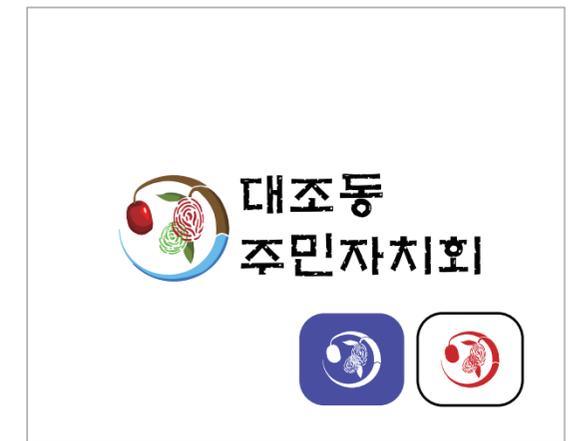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대조동 주민자치회 로고 탄생

대조동의 상징인 '대추'

새로운 열매, 지속적으로 이어진 나뭇가지, 흐르는 물을 지문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의미를 가진 대조동만의 특별한 로고입니다.

대조동 주민자치회 BI



1. 대조동 일반 현황 (2021년 7월 기준)

지역특성

- 통일로 연서로, 진흥로, 서오릉로로 둘러싸인 은평구 중심지역
- 역촌역, 불광역, 연신내역, 구산역 4개역이 접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면적	0.8kk㎡ (구2.8%)	
세대수	14,324세대	
인구	27,240명 / (남성:12,700명, 여성:14,540명)	
주택	7160 동	
통·반조직	34개통 247반 (5개통 재건축 추진중)	
복지수요	기초생활 수급자	1,590
	차상위	604
	저소득 독거어르신	327
	한부모가정	105
	등록 장애인	1,254
	급식지원 아동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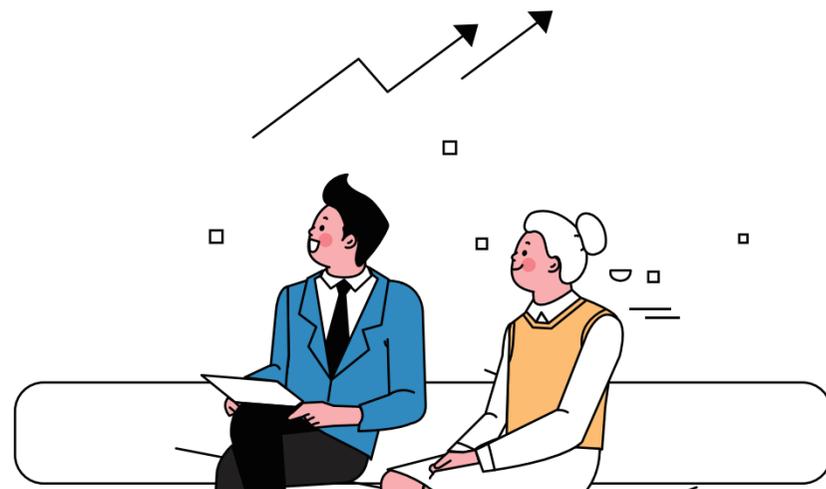
2.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개요

대조동 주민자치회 조직도



회의 운영

회의명	참여주체	주요내용	개최일시
정기회의	전체위원	운영세칙, 자치회 사업, 총회상정안건, 주요일정 등 변경사항	매월 두 번째 화요일 18:30
운영진회의	자치회임원, 분과장	임원선출 등 주요 회의 진행	매월 첫 번째 화요일 11:00
민관협력회의	자치회임원, 행정	자치회전반적운영 및 협력사항	매월 1회 추진
자치회관운영 분과회의	분과원, 간사, 동지원관 등	분과별 사업제안 등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4:00
환경안전생태 분과회의	분과원, 간사, 동지원관 등	분과별 사업제안 등	매월 첫 번째 화요일 10:00
건강복지 분과회의	분과원, 간사, 동지원관 등	분과별 사업제안 등	매월 첫 번째 월요일 18:30
홍보소통교육 분과회의	분과원, 간사, 동지원관 등	분과별 사업제안 등	매월 첫 번째 화요일 18:30



3.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과

대조동 주민자치회 경과 보고

2020.9월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 구성
2020.9.23.(수) ~ 10.30.(금)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홍보 - 90명 (남:44, 여:46명) 신청 접수
2020.11.2.(월) ~ 11.30.(월)	주민자치학교 운영 - 2시간 교육 3회 총6시간 59명 이수
2020.12.11.(토)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추첨 - 공개추첨식 50명 당선 (예비후보 9명)
2021.1.12. ~ 2.26(금)	내규 수립 운영세칙준비위원회 구성 및 - 워크숍 총 3회 진행



운영세칙준비위원회 1차 회의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차 회의



2021.2.24.(수). 임원선출 (공고문)

대조동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15조에 근거하여 대조동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조동 주민자치회 임원 후보 등록

임원의 자격 및 역할	회장(1인)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는 자
	부회장(1인)	회장과 함께 주민자치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자
	감사(1인)	회계처리 및 사업집행에 관한 감사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자
입후보 등록	등록기간	2021. 2. 10.(수) 09:00 ~ 2. 17.(수) 18:00
	제출서류	① 후보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③ 거주지의 경우_ 주민등록표 초본(현 주소 포함) 1부, 사업장의 경우_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 방법	방문접수 주민센터 1층(김은수 주무관 02-351-5202) 이메일 kimeunsu01@ep.go.kr
입후보 명단 공고	2021. 2. 18.(목) 09:00 ~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게시 및 대조동 주민자치회 네이버밴드 공지	
선거운동 기간	2021. 2. 18.(목) 09:00 ~ 2. 23.(화) 24:00	
입후보자 연설회	2021. 2. 22.(월) 14:00 대조동 주민자치회 네이버밴드	
준수사항	임원선출 과정에서 금품수수, 향응 등 부적절한 선거운동 제한	

2. 주민자치회 임원 선출

일 시	2021. 2. 24.(수) 10:00 ~ 20:00	
장 소	대조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선출방법	-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 1인 입후보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과반수 찬성 - 2인 이상 입후보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다수득표자 선출	

2021년 2월 9일
대조동 주민자치회 선거관리위원회

2021 대조동 주민자치회 임원선거



회장1명, 부회장1명, 감사1명, 당선, 간사1명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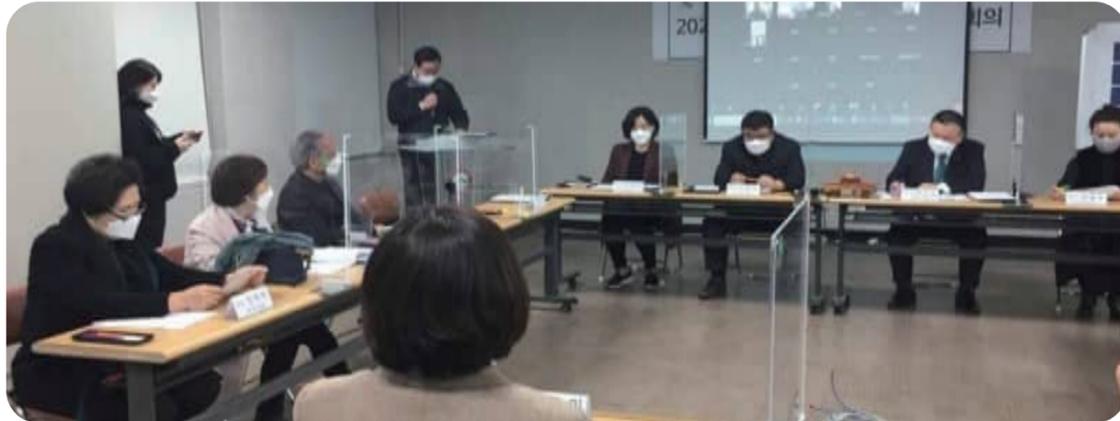
1차 정기회의 및 운영세칙 의결

2021.3.9.(화) 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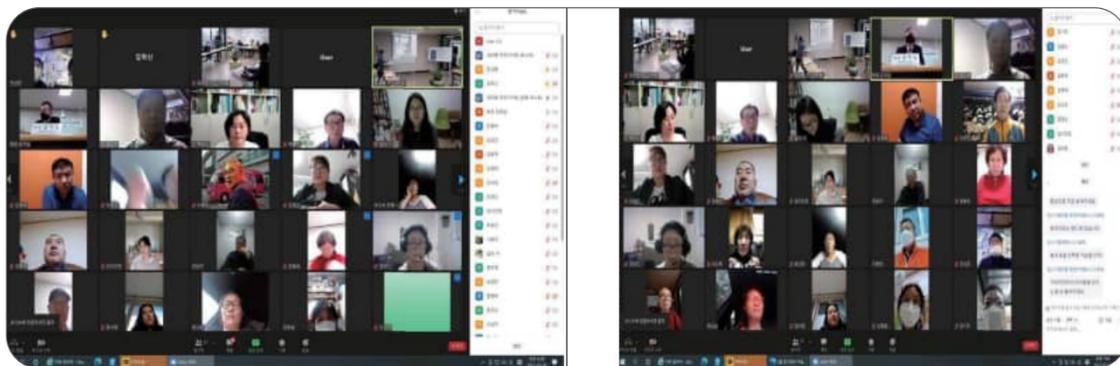
분과구성 워크숍 2021.4.29.(목)

1. 자치회관운영분과 2. 환경안전생태분과
3. 건강복지분과 4. 홍보소통교육분과



3차 정기회의 및 운영세칙 제정 2021.5.4.(화)

- ZOOM 영상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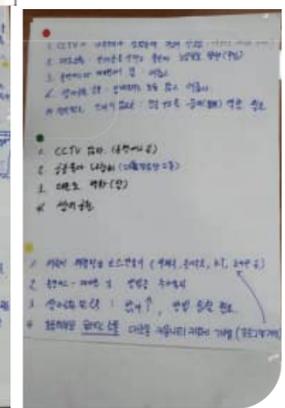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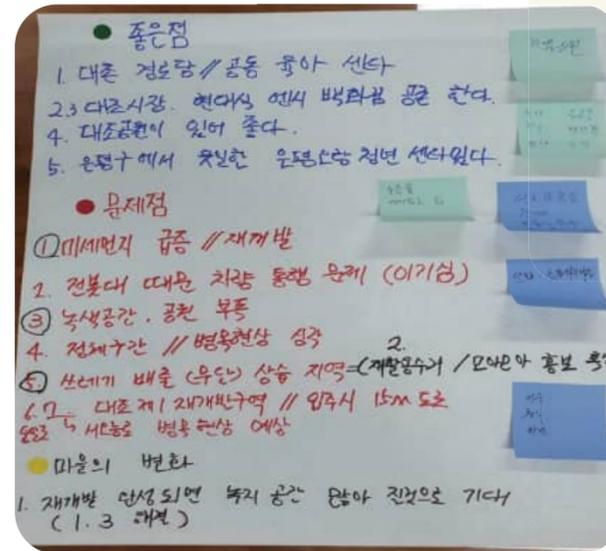
마을 돌아보기

2021.5.13.(목) ~ 5.16.(일)





의제발굴 워크숍 진행 2021.5.19.(수)



1차 운영진회의 2021.5.25.(화)



4개 분과 제1차 분과정례회의 진행 (2021.5)

- 자치회관운영분과 : 5월 24일(월) 14:00 진행
- 환경안전생태분과 : 5월 20일(목) 13:40 진행
- 건강복지 분과 : 5월 24일(월) 19:00 진행
- 홍보소통교육분과 : 5월 26일(수) 19:00 진행



주민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2021.6.4.(금) ~ 7.10.(토)

2021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1 - 001호

2021년 대조동 온라인 주민총회 개최공고

대조동 주민자치회는 대조동 주민들이 마음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이 주도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정민시권주요등 중회 주민들의 신청결과를 공유하여 2022년에 대조동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시행할을 목적으로 「대조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주민총회 개요

- 구 분 :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2조에 따라 「대조동 주민총회」를 개최함
- 일 시 : 2021. 7. 10.(토) 15:00
- 장소/방법 : 대조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홀 // 온라인(유튜브)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주민총회 현상은 온라인으로 송출
- 보고 내용
 - 2021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구상 및 운영 보고
 - 2021년 주민자치회 사업·예산 감사보고

2. 주민총회 투표자격

- 투표 자격요건 : 만 15세 이상의 대조동 생활주민 (다음에 해당하는 주민)
 - 대조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대조동에 소재하는 자립장에 종사하는 사람
 - 대조동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3. 사전투표

- 기 간 : 2021. 6. 21.(수) ~ 2021. 7. 3.(토)
- 방 법 : 온라인 설문 및 기권투표시스템 투표
- 기권투표 : 대조동 관내 거점 4곳
(1) 대조동주민센터 (2) 대조이린이공원 (3) KT·대조우체국앞 (4) NC백화점

4. 결과보고

- 주민총회 개최결과 : 한 달 이내 은평구청 및 등 게시관에 게시 및 사진투표자 문자발송

5. 기타사항

- 위 내용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대조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따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
- 주민총회 후 서울특별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추정이 필요할 시 주민자치회에서 조정·결정합니다.

6. 문의사항

- 대조동 주민자치회 (☎02-305-0278) / 대조동 주민센터(☎ 02-351-5232)

2021년 6월 10일

대조동 주민자치회장



4차 정기회의 및 의제 설명회 2021.6.8.(화)

2022년 참여예산사업 의제 설명회



주민총회 의제 설명 및 사전투표 4개소 운영

2021.6.23.(수) ~ 7.2.(금)

- 거점1: 대조동주민센터, - 거점2: 대조공원,
- 거점3: 엔시백화점 주변, - 거점4:KT전화국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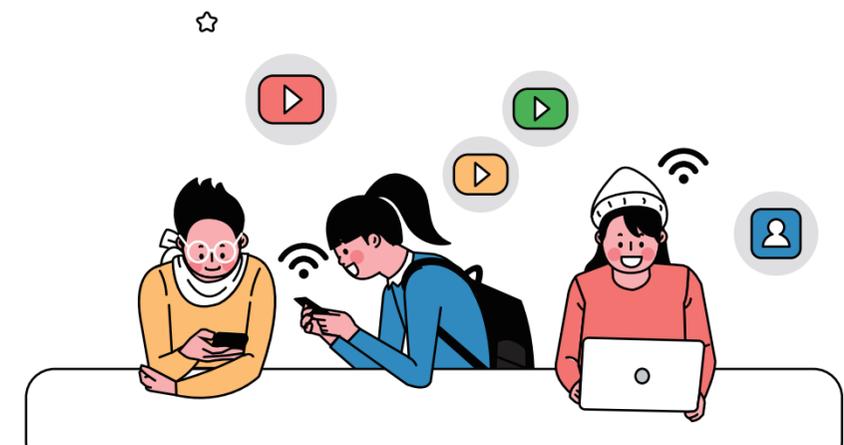
사전 투표소 운영



4. 대~통~~ 소~통~~ 제1회 대조동 주민총회

2021.7.10.(토).15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

시간	내용	진행
15:00 ~ 15:10	식전안내	간사
15:10 ~ 15:15	성원보고·개회선언	회장
15:15 ~ 15:20	개표선언	회장
15:20 ~ 15:30	축사영상	간사
15:30 ~ 15:40	활동보고	회장
15:40 ~ 15:55	의제설명	영상
15:55 ~ 16:00	투표결과	회장
16:00 ~ 16:05	회계보고	간사
16:05 ~ 16:10	폐회선언	회장



제1회 대조동 주민총회 활동 모습





5. 2022년 대조동 주민자치회 사업선정 보고

구분	사업명	예산액	예산액	
소계	8건	118,605		
주민세 환원 사업	의제개발비	20,000	의제발굴 및 주민총회 개최관련 예산	
	의 제 실행비	기후·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6,805	친환경 제품 만들기 강의, 친환경 제품 나눔활동 등
		대추나무 식재를 통한 특화마을 운동	6,200	관내 대추마을 묘목 보급
	코로나19 극복! 주민교육	15,600	코로나 시대 적응교육 - 노령계층 스마트기기교육 등	
시참여 예산	특별한 방학놀이터	20,000	어린이 대상, 수요조사하여 방학프로그램 (여름 물놀이, 박물관 체험 등) 운영	
구참여 예산	책으로 여는 대통	20,000	주민센터 2층 북카페 활성화 (무인대출반납기, 음료머신설치 등)	
	함께하는 대조동	15,000	자치회 홍보용 온라인 카페, 유튜브 개설 및 시설설치 (음향장비, 빔프로젝터설치)	
	우리동네 널리 알리기	15,000	대조동 종합안내도 설치	

2021년 대조동 주민총회 주민제안 의제

기후 _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 목적 : 주민 한 명, 한 명의 노력을 모아 기후 환경개선
- 내용
 - 기후환경 인식개선 강의 개최
 - 천연제품 만들기 활동, 아나바다 행사 개최 ※ 환경동아리 구성
 - 활동내용을 온라인으로 주민 모두와 공유 ※ 대조동넷 연계

책으로 어는 대통(대조동 소통)

- 목적 : 독서환경 조성, 주민 독서문화 장려
- 내용
 - 대조동 자치회관 2층 북카페 운영 활성화
 - ① 북카페 운영 자원활동가 양성
 - ② 북카페 운영을 위한 음료 자판기, 커피머신 등 구입

대조동 관내 대추나무 심기 특화마을 운동

- 목적 : 대조동에 대추나무를 심어 마을 상경화
- 내용
 - 대추나무 심기 운동(대조동 관내 공원 등)
 - 주민 대상 대추나무 묘목 보급

함께하는 대조동(함대)

- 목적 : 주민소통 강화
- 내용
 - 온라인 카페제작 : 온라인 카페 디자인 및 대조동 로고제작 등
 - 유튜브 영상제작 등 온라인 활용관련 교육 추진
 - 자치회관 영상 음향기기 등 설치



2021년 대조동 주민총회 주민제안 의제

코로나19 극복! 주민 필수교육

- 목적 :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대응교육으로 주민복지 향상
- 내용
 - 스마트기기 활용 비대면 활동 교육 개최
 - 새 시대에 맞는 안전 또는 성인지감수성 교육 개최
 - 비즈공예 등 동아리 활동교육 개최

특별한 방학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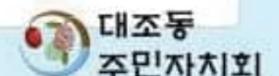
- 목적 :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대조동 어린이들의 더 알찬 방학 보내기 지원
- 내용
 - 대조동 어린이 대상, 수요조사하여 강좌 개설
 - (예시) 물놀이, 보드게임, 쿠킹 클래스, 박물관 견학, 전통 체험놀이 등
 - (여름) 물놀이 시설 임차하여 물놀이 공간 제공

우리동네 널리 알리기

- 목적 : 우리동네에 대하여 널리 홍보, 주민 자긍심 제고
- 내용
 - 대조동주민센터 옆 장미공원에 대조동 종합안내도 설치
 - 우리 동네 특징, 우리 동 주요시설 등 설명

주민자치회 의제개발 & 의제발굴

- 주민자치사업 의제발굴 및 2022년 주민총회 & 성과공유회 추진
 - 2022년 주민자치회 의제발굴 워크숍 & 마을돌아보기 활동
 - 2022년 주민총회 개최_ 주민총회 홍보/ 자료제작/ 시설임차/ 공연섭외
 - 2022년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6. 부 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안]

일시	내용	진행
2021.1.22.~ 2021.2.2		내규 수립 의견수렴
2021.2.3		내규 수립 워크숍
2021.2.8	1차 안: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준비위원회 1차 회의
2021.2.16	2차 안: 운영 세칙 초안 정리	운영세칙준비위원회 2차 회의
2021.3.9	제정	1차 정기회
2021.5.4	제정	3차 정기회

2021. 5.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안)

제정 2021.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운영세칙)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주민자치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대조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회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대조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세칙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임원”이란 주민자치회 회의체계에서 선출된 위원을 말한다.
6. “고문”이란 대조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원과 대조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의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대조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5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3조의 기본이념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4. 주민의 화합과 세대통합 및 지역 간 협력 도모
5. 주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모색 및 지역문화 진흥

제6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대조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7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업무의 협의 업무
3.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위탁·수탁 업무
4.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의사결정 업무
5.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계가 필요할 경우 참여예산분과 위원회와 소통 한다.
6. 자치회관의 운영
7.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8조(설치 및 해산) 주민자치회의 설치는 조례 제4조에 따르며,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은 재적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9조(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제10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 자격, 임기, 대우 및 선출방법 등은 “조례 제8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나.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다.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2.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 다.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 라. 다른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
- 마.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첨 없이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인정한다.

- ② 제1항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기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13조(위원의 사임) 임원, 자치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업무 인수인계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임서를 자치회장 또는 임원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임서 제출 익일부터 사임한 것으로 한다. 단, 추진 중인 업무가 없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등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제14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의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 (위원의 의무)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 연간4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이거나 연속적으로 3회 불참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위원이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단,임원은 제외한다.)

4. 자치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청탁·금품 수수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5.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시켜 현저한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6. 자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치위원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해촉절차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임원 및 임기)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회장(이하 '자치회장' 이라한다.) 1명
2.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 이라한다) 1명
3. 감사 1명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4. 분과별 분과위원장 1명

제16조(임원 선출) ①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및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 선출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재선거의 경우는 다수득표자로 선출한다.

-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경쟁 시 분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선출한다.)

제17조(임원의 의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분과위원회 회의(이하 '분과회의' 라 한다)는 분과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며, 분과총무를 지명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주민자치회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회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요구시 적정한 분과위원회 와 소통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록으로 보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전반을 수행한다.
- 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분과총무 및 자치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은 분과회의에서 해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1. 임원회와 분과회의에 각 연 4회 연속 3회 불참할 경우
 2. 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자치회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 경우
- ②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 또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임시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궐위와 후임선출) 자치회장 등 임원 궐위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한다.

1. 자치회장 궐위 시 조례14조에 따라 자치부회장이 남은 임기동안 자치회장직을 대행한다.
2. 자치부회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3. 감사와 분과위원장 궐위 시 30일 이내에 선출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수행한다.

제21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1. 주민총회
2. 정기회회

3. 임시회의
4. 임원회의
5. 분과위원회
6. 민관협력회의

② 회의의 진행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2.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 또는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하여야 한다.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대조동 고문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문과 지원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 ④ 자치회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 작성시에는 간사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의 상황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내 외부 인사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⑥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②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자치계획 일정에 따라 조례 제 21조에서 정한 세부계획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결정한다.
-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참여예산사업 및 주민세환원사업의 제안,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 ④ 주민총회는 개최일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 주민의 1% 이상 참여로 개의한다.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주민총회일 현재 만15세 이상의 주민을 기준으로 한다.
-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명의로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개의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의 산정에 있어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에 사전투표에 참여한 주민은 개의 및 정족수에 산입한다.

제23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두번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이 공휴일인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고 자치회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시간, 장소, 안건 등에 대하여 자치위원들, 동장 및 분과위원장과 고문에게 유선 또는 SNS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정기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회칙의 제정 및 변경(개정, 폐지)
2. 사업계안 및 수지예산안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심의의결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안건의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7. 수입, 지출 내역을 포함한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결의 및 보고사항 승인
8. 임원의 선출 및 해임, 간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의 해촉 요구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회의에서 개최를 요구할 때
3. 동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기재하여 자치회장에게 서면으로 개최를 요구할 때

제24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간사 및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회 의결사항(위임된 사항 포함) 중 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기회에 부의할 사항
3. 행정사무 위·수탁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조정사업에 필요한 사업단 구성 및 실행
5. 동장 또는 분과위원에서 부의된 사항
6.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2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분과회의 수는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 ③ 분과회는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의 분과 총무를 지명한다.
- ④ 각 분과회의는 분야별로 구성하되 운영세칙 제정 후 정기회에서 결정한다.
-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분과위원 수는 최소 7명으로 한다. 분과회의는 마을의제를 실행하는 실질적 집행기구로 월 1회 분과위원장이 소집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제26조(민관협력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회의를 둔다.

- ② 민관협력회의는 동장, 팀장, 동 담당자,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고문, 간사, 지원관 및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직능단체 등 협력체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③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하며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27조(회의의결) ① 자치위원은 자치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자치회장은 가부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모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변경(개정, 폐지)
 2. 임원 해임 결의
- ④ 주민자치회의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자치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매년 11월까지 다음연도 당해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 ②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안을 정기회에 보고한다.
- ③ 분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홍보 및 협업, 주민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6. 자치위원과 분과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실시
- ④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 ⑤ 선정된 우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관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 임원은 국가·시·구·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국가·시·구·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대조동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운영은 연간 사업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기록물의 비치 및 보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위원 위·해촉 대장
 2.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서류
-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 회의록
 2. 주민자치회 회의록
 3.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및 직인관리대장
 4. 문서수발 대장
 5. 문서등록 대장

- 6. 각종 회계장부
 - 7. 자치계획서
 - 8. 분과위원회 회의록
 - 9. 기타 전자문서를 포함한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기록물로서 은평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한다.

제31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되, 직인의 규격과 전자이미지 직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조례”에 따른다.

-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별도 서식의 직인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사항을 정리한다.
- ③ 자치회장은 간사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 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사무의 인계) 사무인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임원, 자치위원 및 분과원의 임기 만료, 사임 및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무 대행위원에게 인계하고 상호 서명하여야 한다. 단, 추진 중인 업무가 없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등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인수인계 시점은 지방자치법 제66조(사무인계)를 준용하되, 임기만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사임, 해임 또는 기타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재정 및 예산관리

제33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결과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비 교부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수강료는 자치회관 이용자에게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
- 2.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업 예산
- 3. 수입금(수탁금)은 주민자치회관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 4. 찬조금은 사업추진을 독려하고자 주민 및 임원 등의 후원한 예산

-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 납부한 재정 등은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간사가 관리 한다.

-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개최 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정지출은 별도의 서식에 따라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치회장이 승인을 받아 지출하여야 한다.
- ④ 간사는 정기회의시 수입, 지출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감사수감) ① 자치회장은 위탁받은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② 자치회장은 감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기관 이나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선거관리위원회

제38조(정의) 주민자치회는 위원중에서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해 임원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9조(인원수 및 겸직제한)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호선을 통해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회장, 자치부회장, 감사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0조(절차규정)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임원선출 관리를 위해 선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해산) 임원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승인 의결을 거쳐서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세칙 시행 이전에 행해진 최초의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행위 (임원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임원선임 등)는 본 세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참여산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일체의 사무, 재산 등은 본 주민자치회에 승계한다.

제3조(기타)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